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역서

대상자 인적사항	대상자의 성명:	주민등록번호: -	
	대상자녀의 성명:	주민등록번호: -	
사업자 등록사항	사업자명:	사업자관리번호:	
	담당자 성명:	(전화번호:)	
근로 시간 단축 기간	(시작일) 년 월 일 (종료일) 년 월 일	임금 계산 기간 ☑ 체크	(□전월 □당월)___일 부터 (□당월 □익월)___일 까지의 급여를 (□당월 □익월)___일 에 지급
해당하는 시간에 ☑ 체크	□ 주 40 시간 -> 주 35 시간	※ 작성방법 - 육아시간 단축 전 주40시간(월~금 하루 8시간)에서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에 체크하거나, 정상근무가 주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 시간에 체크 후 정상 근무시간 및 단축 시간을 수기로 작성 - (예) 40시간->32시간, 40시간->32.5시간, 35시간->30시간, 30시간->25시간, 20시간->15시간 작성	
	□ 주 40 시간 -> 주 30 시간		
	□ 주 40 시간 -> 주 25 시간		
	□ 주 40 시간 -> 주 20 시간		
	□ 주 40 시간 -> 주 15 시간		
	□ 주____시간 -> 주_____시간 (기타 시간)		

월 지급액	※ 작성방법: -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작성(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재) - 작성 예: 단축 시작일이 2월 1일의 경우 2월 1일 기준으로 단축 전(40시간)/후(35~15시간) 통상임금을 구성(*기본급, 직급, 자격, 식대, 근속, 면허, 위험, 직무수당 등*) 별로 해당하는 수당을 기재 후 금액을 작성 ※ 통상임금이란?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(잔업(시간외)수당, 성과급, 가족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)					
	기본금 (원)	직급수당(원)	식대(원)			합계 (원)
단축 근무 전 (주40시간)						
단축 근무 후 (주35~15시간)						

위 근로시간 단축내역서는 육아기 단축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 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음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장 명(대표자): (인)

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귀하

전화 : 031-231-7850 팩스 : 0508-8230-0238